

# 2026년 친환경농산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

담당부서 :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팀

지방보조금법 제7조 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2026년 친환경농산분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## 1. 지원개요

| 공모번호      | 공모분야             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|
| 제2026-79호 | '26년 친환경농산분야 지원사업 |    |

※ 2026년도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단체 또는 개인별로 지원

## 2. 공모사업

| 공모분야     | 대상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농산물 생산지원 |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등 25개 사업 (붙임 참조) | 민간경상 자부보조 등 |

※ 예산 증감에 따라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으며, 직불제 등 일부 사업은 사업별 세부 절차에 따름

## 3. 지원대상(신청자격)

- 공고일 현재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인으로 사업 장소가 관내인 농업인, 작목반 등
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·농업법인 등

## 4. 사업 선정기준

-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지방보조사업 심의·선정
- 신청자 사업의 적격성, 효과성, 신청예산 내역의 타당성 등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심사

## 5. 사업추진기간 : 2026. 1월 ~ 12월

## 6. 보조금 지원범위

- 법인, 작목반, 단체, 개인의 사업비 지원 원칙 (운영비 지원 불가)
- 보조사업은 사업 대상자의 자기자본 부담액 원칙

## 7. 신청 및 제출서류

- 신청기간 : 2026. 1. 12. ~ 2026. 1. 30.까지  
※ 대상사업에 따라 신청기간이 상이함(연중)
- 신청장소 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 
※ 대상사업에 따라 신청장소가 상이함(주소지 또는 농지소재지 기준)
- 신청방법 : 직접방문
- 제출서류 : 신청서, 단체소개서, 사업계획서 등 지원사업별 필요 서류

## 8. 심의 및 결과통보

-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·선정
- 사업 선정 후 사업 부서에서 읍면동으로 통지, 선정 결과 개별 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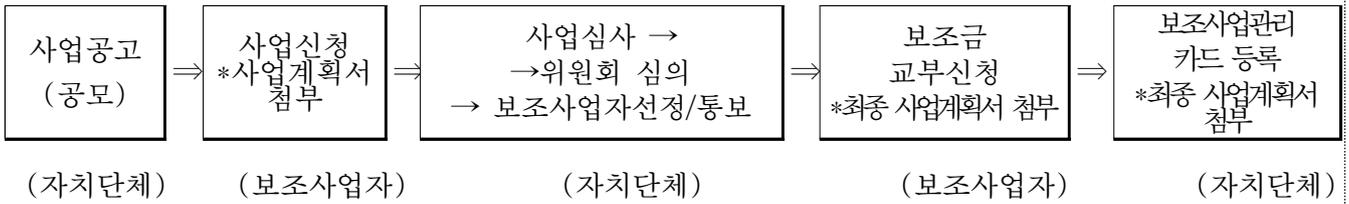
## 9. 기타사항

-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탬e)을 통한 지방보조사업 진행, 일부 사업은 진행절차가 변경될 수 있음. (시행시 별도안내)

2026. 1. 9.

세종특별자치시장

**< 유 의 사 항 >**



**1.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(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)**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기자본 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하는 사항)
- 지방보조금 관리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 : 지방보조사업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(자부담 포함),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함(농협 시금고 통장 및 체크카드 개설)
-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**2. 지방보조사업의 수행**

-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
-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보조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지방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**3.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**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

**4.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**

-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한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**5. 기타사항**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부서에 신청(분산 신청시 불인정)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지원조례 및 관련 규정예 의하고,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세종시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산팀(☎300-4322~4,433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